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

규제법무감사팀장(2012.4.2)

2012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창덕궁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1. 감사개요

○ 기 간 : 2012. 2. 20(월) ~ 3. 23(금) (기간 중 14일간)

○ 감 사 자 : 행정사무관 ○○○, 시설주사 ○○○, 행정주사 ○○○, 행정서기보

ㅇㅇㅇ 등 4명

○ 대상기관 : 창덕궁관리소, 창경궁관리소, 칠백의총관리소 등 3개 소속기관

ㅇ 감사대상 :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
○ 감사중점 : 세입·세출예산집행, 공사 및 시설물 관리, 물품 및 유물관리,

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

Ⅱ. 감사결과

□ 감사결과 : 총 16건

○ 처분내용 : 주의 3건, 기관주의 2건, 시정 9건, 모범사례 2건

※ 환수금액 : 5건 10,151,740원

행정상 조치 : 총 13건 (기관주의 2건, 시정 9건, 모범사례 2건)

• 창덕궁관리소 : 5건 (기관주의 1건, 시정 3건, 모범사례 1건)

· 창경궁관리소 : 4건 (기관주의 1건 시정 2건, 모범사례 1건)

• 칠백의총관리소 : 4건 (시정 4건)

※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연말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

- 신분상 조치 : 총 3건 (주의 3건)

・ 창덕궁관리소 : 주의 1건

• 창경궁관리소 : 주의 1건

• 칠백의총관리소 : 주의 1건

- 재정상 조치 : 환수 5건 10,151,740원

· 창덕궁관리소 : 환수 2건 3,661,740원

· 창경궁관리소 : 환수 2건 5,960,000원

· 칠백의총관리소 : 환수 1건 530,000원

Ⅲ. 총 평

- 반복적으로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, 사업비 정산(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)항목 등을 정산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
- 일부 기관에서는 회화류 등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며, 유물취급규정에 의한 유물관리대장 및 유물분류 목록 작성이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
-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 으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회계 예산으로 집행함
-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, 적격심사 등 입찰공고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
- 금번 감사 대상 3개 기관 중 창덕궁관리소 등 2개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합당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직원회식 등의 명목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부대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여 공직 윤리 의식제고 노력이 필요
- 관행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절을 위해 각 부서에 감사 사례 전파 및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 검토

Ⅳ. 조치계획

-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
-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

첨부 :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.

□ 창덕궁관리소 6건: 주의 1건, 기관주의 1건, 시정 3건 (환수 2), 모범 1건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고
①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		
○ '창덕궁 내부 노후담장 보수정비공사'용역비 (2011.4.28 / 34,365천원)를 산정(직선보간법)하면서 산출수식에 추정가격(727,272,727원 / 부가가치세 제외금액)을 반영하여야 하나, 총공사금액(800,000천원)을 적용하여 2,587,200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주하였고, - 서울지방조달청(기술심사팀 ○○○)에서 동 공사는「건축사법사업대가기준」이 아닌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」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받고 별도의 검토과정 없이 이를 인정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」으로잘못 적용하여 39,795,000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음. - 이는 결과적으로 5,475,000원을 과다하게 발주하게됨으로써 낙찰율(88.843%) 기준 3,874,083원의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.	용역비 대가 산정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859 / 2009.9.2) 에 근거하여 동 예규 [별표2] 의 공사 추정가격 금액에 따라 당해 요율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 하시기 바람 * 관련자 : 시설주사보 ㅇㅇㅇ	주의
 ②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> 창덕궁관리소는 2010~2011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총 16,758,150원을 업무추진비(240목) 성격으로 부당하게 집행함 - 2010년도 : 34건 11,624,150원, - 2011년도 : 19건 5,134,000원 	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 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1.9월 이후 부당집행한	기관 주의 (환수)
③ 입찰·계약체결에 관한 사항	o 향후 입찰·계약 업무 추진 시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	시 정

	지 적 내	용		처 분 요 구	НI	ュ	
⑤ 존덕정 해체보	수 적심재	정산 관련					
ㅇ 창덕궁관리소는 '존덕정 해체보수'('10.5.18~'				ㅇ 시공물량 축소에 따른 재료비			
10.9.29/220,651,000원)의 지붕공사 중 적심목				미시공분을 환수토록 하고 향후			
 설치는 당초에 구부재를 40% 재사용하고, 신재를				부터는 감독 및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			
60%(1883.95재,	2,164,6585	^원) 사용토 ^를	륵 설계되어	(환수금액 : 금 231만 6,740원)			
있었으나, 실제	공사에 있어	서는 해체투	부재 중 기존				
용도로 사용할 =	수 없는 구 	부재를 적심	재로 90%				
 사용하고, 신재를	를 10%만 사용	용하였음에도	를 불구하고,				
					시	_	
 ㅇ 정산과정에서 3	적심재 구부	재 사용량(<u>5</u>	50%)을 삭감		(환	수)	
하지 않고 당초		•	-				
정산하여 지급한	사실이 있	임	/5101 OI)				
			(단위: 원)				
분	당 초	조 정	비고				
적심재 사용 물량	1,883.95재 (신재 60%)	313.9재 (신재 10%)	감 1,570.05재				
원가계산금액 (전체공사비	220,651,000	218,334,260	감				
기준)	220,001,000	210,001,200	2,316,740				
	로음 화요하	 펴이시선 I	 잔 민 성치				
③ 서면세에 되해 [사업내용]	TE EOL						
- [시 급대명] - O 2010년 9월 저	비7층 대포	고파스 20	11년 어르	ㅇ 2012년 연말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			
0 2010년 3월 X 집중호우로 쓰러							
B3포기포 프리 폐처리하지 않고							
인력을 할용하여							
66개를 제작 하여 활용하고 있음					모	범	
[효과]							
│ │ ○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관람 편의시설을 비치하여							
궁궐 내 관람편의시설 부족 일부 해소							
ㅇ 예산절감액 : 26,800천원 (자체인력 활용)							
- 1인용 의자 :							
- 3~4인용 장의기	다 : 47개*55	50,000원=25	5,850,000원				

지적내용 처분요구 비고

□ 창경궁관리소 5건 : 주의 1건, 기관주의 1건, 시정 2건 (환수2), 모범 1건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고
① 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○ 창경궁관리소는 '홍화문 보수공사'(2009.4.16 / 206,352천원)를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 ○○○)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서에 '수리보고서' 비용 (8,464,730원)과 '단청특성조사용역' 비용(13,240,920원) 등 총 21,705천원을 계상하였으나, 이는 과업내용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확실함으로 사후원가검토(P.S)를 조건으로 한 잠정금액으로 책정하고 계약이행 완료후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- 확정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을 하지 못하고계약금액(21,705,650원)을 그대로 인정하여8,020,65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* 정산금액: 13,685,000원 (2012.3.7 업체 제출)	○ 향후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 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 (P.S)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하시기 바람 * 관련자 : 시설주사 ○○○	주 의
②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이 이 ① 「국가재정법」제4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및 「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집행지침」에 의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- 창경궁관리소는 2010~2011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(210-01목), 특근매식비(210-05목), 시설부대비(420-05목)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총 7건 5,206,220원을 (2009년도 : 3건 2,971,220원,2010년도 : 3건 1,835,000원, 2011년도 1건 400,000원) 업무추진비(240목) 성격으로 부당하게 집행함	○향후 예산집행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부 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, 2011, 9월 이후 부당집행한 1건(400천원)은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 (환수금액: 금 400천원)	기관주의 (환수)
③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세금 미부과		시 정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고
○「소득세법」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, 동법 제21조 (기타소득) 및 22조(퇴직소득)의 규정에 근거한 퇴직 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하나, 강사수당 6회 등 기타소득 313,870원(소득세 285,340원, 주민세 28,530원 / 2010년), 비정규직 3명의 퇴직소득 241,110원(소득세 219,210원, 주민세 21,900원 / 2010년) 등 총 554,98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수령자에게 전액 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	ㅇ 향후 급여업무 담당자는 퇴직소득,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	
 ● 환경전 보수공사 관련 ○ 창경궁관리소는 2010.6.1~2010.12.15까지 환경전보수공사(○○건설(주)/534,568,000원)를 시행하였음. ○ 상기 공사에 대한 내역 검토 결과, 설계서(산출서및내역서)에는 지붕하중을 경감시키고자 설계변경을 거쳐 적심재 물량을 늘이고(4,487.13재→10,465.86재)보토 후 강회다짐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보토 공정은 생략(49.85㎡→0㎡)하고 강회다짐을 시공한 사실이 있음 ○ 미시공된 보토공정 물량(5,560,000원)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감액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	이 시공물량 생략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향후부터는 감독 및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(환수금액 : 금 556만원)	시 정 (환 수)
(5) 야간개방으로 대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및 경관 조명 개선사업 실시 [사업내용] - 2011년 '살아숨쉬는 4대궁·종묘 만들기' 사업 관련 상· 하반기 야간개방 실시 -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고 창경궁 복원공사가 이뤄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'밤 벚꽃놀이' 의 의미와 추억을 되새기며 도심 내 휴식공간과	ㅇ 2012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	모 범

지적내용	처분요구	비고
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되는 사회적		
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창경궁 야간개방을 실시		
하고자 하였으나,		
ㅇ 경내 야간 조명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복궁의		
청사초롱 등 조명시설을 대여(행사 후 반납)하여		
자체 인력으로 설치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		
전직원이 야간까지 근무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		
야간개방을 실시하였음		
[효과]		
ㅇ 그 결과 창경궁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실시하여		
관람환경을 개선		
※ 야간 개방에 따른 관람객이 증가		
- 상반기 야간 관람인원 수 (4.26~5.1) : 6,211명		
- 하반기 야간 관람인원 수 (10.3~10.9) : 6,787명		
ㅇ 예산절감액 (자체인력 활용) : 10,394,000원		
- 사업 소요예산 : 15,000,000원		
- 자체인력 활용 : 10,394,000원		
- 외부인력 활용 : 4,606,000원		

□ 칠백의총관리소 5건: 주의 1건, 시정 4건 (환수 1)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비고	
① 순의비각 개축공사 관련 ○ 칠백의총관리소는 '09.4.21~' 09.9.11까지 순의비각 개축공사(ㅇㅇ건설(주) / 85,392,000원)를 시행하였음 ○ 상기 공사에 대한 설계 내역을 검토한 결과, 기단공사에서 테두리는 화강석기단으로, 기단바닥은 방전깔기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, 석재 가공품은 화강석 테두리면만 가공(도두락 25는)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하나, 수량 산출서에는 기단 테두리 및 기단 바닥을 석재(화강석) 가공토록 품이 적용되어 있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 되었고 보 당초 조정 비고화강석기단 가공물량 34.31㎡ 11.63㎡ 감 22.68㎡ 가공물량 원가계산금액(전체공사비기준) 85,392천원 82,414천원 감 2,978천원 ○ 설계검토 및 공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설계 변경 감액하여야 하나,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감액조정하지 않아 2,978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결과를 초래하였음		주 의	
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 ○ '경외화장실 정화조 교체공사'(입찰일 2009.3.31 / 발주금액 25,919천원)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입찰공고문에는 「재정 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 기준」에 따라 공사수행 적격자를 평가한 후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나, 실제로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견적입찰 방식의 견적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, ○ '건설공사 폐기물'(4,673천원)이 141톤으로 분리발주 기준 100톤을 초과하였음에도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법률」의거 건설폐기물이 100톤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계약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업체(으으건설)에서는 하도급 방식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시기			

지 적 내 용	처 분 요 구	Ы	고
으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음			
③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세금 미부과 ○「소득세법」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, 동법 제21조 (기타소득) 및 22조(퇴직소득)의 규정에 근거한 퇴직 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나, 강사료 등 기타소득 246,400원(소득세 224,000원, 주민세 22,400원 / 2009~10년), 비정규직 20명의 퇴직 소득 424,530원(소득세 386,030원, 주민세 38,500원 / 2009~12.3월) 등 총 670,930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	o 향후 급여업무 담당자는 퇴직소득,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람	۸I	정
④ 「궁능 방재시스템 구축」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			
 ○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의「궁능방재시스템 구축」 예산을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야간경비 인력 임금, 야간방호 활동에 따른 제복비, 특근매식비 등 방재 예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○ 2011년도「궁능방재시스템 구축」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, 연말 예산 불용 등을 우려하여 사업목적상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'칠백의총안내 리플릿 국어 번역비'등 4건 (9,110,600원)을기금회계인「궁능 방재시스템 구축」예산으로 집행함 	○향후에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	시 (정책: 통.	총괄과
⑤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여비 지급 부적정 ○ 칠백의총관리소는 2개조로 나누어 (A조 '10.10.13 ~ 10.15, B조 '10.10.19 ~ '10.21) 총 18명이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음 ○ 상기 여행 과정에서 이동 수단을 차량 임차(○○렌트카 / 780,000원)로 추진하였으므로, 여비 정산 시 "공무원여비 규정"에 따라 일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함	O 과다 지급된 여비는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"공무원 여비 규정"에 따라 여비 정산 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(환수금액 53만원)	۸	정 수)

	지 적 내 용				처 분 요 구	비	고	
	일자	인원		일비,	과지급액 (일비 50%)			
A조	10.13~15	7명	420천원	420천원	210천원			
B조	10.19~21	11명	640천원	640천원	320천원			
계		18명	1,060천원	1,060천원	530천원			